1. 5-06-055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징구용)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6조 (약관 변경)	**제16조 (약관 변경)**	
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.	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	공정위 표준약관을 원용하고 법령개정등 긴급변경사유 추가
(신 설)	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서면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다만,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	변경내용 통지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원용
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 변경 사항을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	③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	항체하 및 공정위 표준약관 원용

2. 시행일 : 2013년 5월 2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: 1개월간 공지후 적용

-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로서 공지기간내에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가입고객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.

4. 공지기간 : 2013년 4월 1일 ~ 2013년 5월 1일